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재섭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70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24.

발 의 자 : 김재섭 · 김기웅 · 김위상
박수민 · 정성국 · 엄태영
유용원 · 주진우 · 서천호
김장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어 아동 보호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아동을 학대 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의3제2항).

법률 제 호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3제2항 중 “10년”을 “30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의3(아동관련기관의 취업 제한 등) ① (생 략)	제29조의3(아동관련기관의 취업 제한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 은 <u>10년</u> 을 초과하지 못한다.	② ----- ----- <u>30년</u> -----.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